

북한의 투자유치 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방향

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
선임연구위원
hgjeong@kiep.go.kr

김지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
전문연구원
jykim@kiep.go.kr

이종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
전문연구원
jwlee@kiep.go.kr

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
전문연구원
iphong@kiep.go.kr

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- 북한은 1990년대 사회주의 경제의 붕괴로 인해 전통적인 구상무역방식의 교역이 불가능해지면서 경제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.
- 경제건설을 위한 자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당국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외자유치 정책을 펼쳤으나 모두 실패함.
- 최근 들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로 북한의 교역과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커지자 북한은 중국 자본유치를 통한 경제회생에 적극 나서고 있음. 특히 2011년에는 ‘공동개발’, ‘공동운영’이라는 구호하에 라선특구와 황금평지대 경제특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음.
- 최근 몇 년간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,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 등으로 우리의 대북정책, 특히 경협정책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.
-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북한의 외자유치정책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며, 라선특구 및 황금평 개발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북한의 외자유치 방향을 전망하고 남북경협의 방향에 대해 논의함.

2. 조사 및 분석 결과

- 북한 당국의 투자유치 전략의 기본방향
 - 국가별로 중국 자본을 먼저 수용하고 향후 대외관계 개선 시 타국의 자본을 흡수함.

- 단기적으로 경제제재와 체제개혁에 대한 요구가 심하지 않은 중국 자본을 우선 흡수하고 북핵문제 진전 양상에 따라 서방국가 자본을 유치하고자 함.
- 각 자본의 특성별로 공적자본을 먼저 유치하고 이를 점차 민간투자로 확대하고자 함.
 - 북·중 간 경제협력의 기본원리는 ‘정부 주도, 시장원리, 기업위주, 상호이익’으로 요약되며 최근 ‘정부 주도’의 외자유치가 강조되고 있음.
 - 2000년대 중반 이후 동북3성의 기업이나 소자본 진출에 중점을 둔 중국의 대북 투자는 2009년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및 김 위원장의 두 차례 방중 이후 중국정부 주도하에 투자계획이 진행되고 있음.
 - 황금평·라선특구 공동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으며, 북한정부의 개입 확대 시 중국 대형 국유기업의 대북 투자가 확대되고, 투자자본 규모와 대상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.
- 투자대상 측면에서는 사회간접시설에 선투자하고 점차 기업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자 함.
 - 중국의 공적자본 투자 확대 시 우선 투자대상은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 시설임.
 - 공적자본을 활용하여 북·중 접경지역의 교통망과 전력설비를 개선하고 민간기업의 자발적 대북 투자를 유인하고자 함.
 - 중국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대북 지원성 투자가 아닌 동북3성과 북한간의 경제적 연계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음.

■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 합영·합작사업의 최종 목적

- 선진국의 첨단과학기술 도입을 통해 낙후된 북한경제를 단번에 도약시키고,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함께 도모하고자 함.
 - 대외경제 활성화, 성장 및 김정일 체제 진입 후 강성대국 건설 촉진을 위해 선진과학 기술의 적극적 도입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음.
 - 선진국의 첨단과학기술 도입이 비주체적이라는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이며 과학자·기술자의 교류확대 및 양성사업에 서로 협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.

→ 국제학술회의 참가, 과학자 및 기술자의 유학·과견, 해외 저명학자 초빙, 선진기술국가 및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사업 조직, 과학기술 관련 문헌의 적극 수입 및 보급 확대 등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조함.

표 1. 외국인 투자기업 유형별 비교

	합영기업	합작기업	외국인 기업
설립지역	제한 없음	제한 없음	라진-선봉 경제무역지대
투자방식	공동	공동	단독(외국투자자)
출자비율	당사자간 협의	출자지분 개념 없음	외국인 100%
감자	허용 안됨	규정 없음	허용 안됨
설계승인 처리기간	1개월 내 (지대내는 50일 이내)	50일 내	80일 내
경영방식	공동	단독(북한 측)	단독(외국인투자자)
경영조직	이사회	규정 없음 (다만, 상설공동협의기구 설치)	규정 없음
분배	이익	공동(투자비율)	단독(외국인투자자)
	손실	공동(투자비율)	단독(외국인투자자)
물자구입 및 제품판매	- 원칙: 국내거래는 합영자재 생산 - 기타: 무역기관, 여타 합영·합작회사를 통한	규정 없음 (외국기자재 수입 시 국가승인 필요)	국내거래는 해당 무역기관을 통한
보험	북한보험기관	규정 없음	북한보험기관
기업소득세	- 25%(지대: 14%) - 이윤발생 후 3년 면제, 연장 가능	법규정에 의함 (합영기업과 같은 것으로 추정)	- 14% - 이윤발생 후 3년 면제, 2년연장 가능(50% 면제)
관세	수출입관세 면제	규정 없음	수출입관세 면제
기타 조세	거래세, 재산세, 도시경영세, 등록면허세, 자동차 이용세 등	거래세, 재산세, 도시경영세, 등록면허세, 자동차 이용세 등	거래세, 재산세, 도시경영세, 등록면허세, 자동차 이용세 등
분쟁해결	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 합의 시 제3국 중재기관	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	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
회계, 세무감독	재정검열원의 검열	해당 재정기관	내각과 해당 중앙기관

자료: 서갑성(2007), 「북한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」, 『동북아논총』, 44집, p. 144.

- 북한 외자유치정책에 대한 경제적·정치적인 제약에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대북 투자는 농업 협력 등과 같은 원조 및 개발지원형 진출 내지 일부 특정지역의 관광·서비스업 진출, 인프라 건설 참여 등

의 범위로 제한될 수밖에 없음.

- 경제적 제약:

- 정치·안보상의 위험요소와 미흡한 투자보장 장치 등으로 인해 투자리스크가 매우 높음
- 전력·철도 등 북한의 기본인프라가 매우 취약
→ 전력부족이 심각하고 북한 내 화물운송의 90% 이상을 담당하는 철도설비의 노후화 등 기본 인프라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 상태임
- 투자자 및 기업인들의 통행 및 통신상 제약
→ 투자기업인의 출입 통행제한 때문에 경영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어려움
- 기업경영상의 제한
→ 북한 노동력 모집, 해외에서 물자 구입 및 해외 생산품의 북한 내 판매 제한

- 정치적 제약:

- △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 △ 북·미 관계의 정상화와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 △ 개혁·개방 노선 공식화 등과 같은 근본적인 투자환경의 변화가 필수적임.

표 2. 외국인 투자법의 최근 개정 추이

조 문	기존 규정	2004년 개정	2007년 개정 비교
제2조	· 이 법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보호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·운영하는 일반 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제한다 · 외국인투자기업이란 공화국 영역 안에 설립한 합작기업, 합영기업, 외국인기업을 말한다	· 이 법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보호하며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원칙과 질서를 규제한 외국투자관계의 기본법이다 · 외국투자기업이란 공화국 영역 안에 창설한 합작기업, 합영기업, 외국인기업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말한다... 외국기업이란 공화국영역안에서 소득원천이 있는 다른나라 기관, 기업체와 개인 및 기타 경제 조직을 말한다. ⇒ '외국기업' 의 개념을 추가	-

표 2. 계속

조 문	기존 규정	2004년 개정	2007년 개정 비교
제3조	· 외국인 투자자는 공화국 령역안에 합작기업, 합영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	-	· 외국인기업은 정해진 지역에 창설·운영할 수 있다(추가) ⇒ 외국인기업의 창설이 기존법에는 라선지대에 한정되었지만, 개정문에서는 북한 당국이 지정한 지역에 창설할 수 있도록 변경
제4조	· 국가는...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	· ...합법적 권리와 이익,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한다. ⇒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보장조건을 추가	-
제5조	· ...공화국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법에 따라...	· ...해외조선동포들도 해당법규에 따라... ⇒ 남한의 기업, 개인은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확실히 함	-
제6조	· 외국인 투자자는 공업, 농업, 건설, 운수, 체신, 과학기술, 관광, 유통,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	-	· 외국인 투자자는 공업, 농업, 건설, 운수, 체신, 과학기술, 관광, 유통, 금융 같은 여러 부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⇒ 다양한 투자방식 보장
제14조	· 공화국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사, 대표부, 출장소는 우리나라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	·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기업의 지사, 대리점, 출장소 같은 곳과 외국기업은 공화국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⇒ 외국기업 추가	-
제15조	· 임대하여 준 토지는 임대받은 기간 안에 해당기관의 승인 아래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.	-	⇒ 임대토지의 양도 및 상속규정 삭제
제16조	· 우리나라 인력은 해당 알선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채용하거나 내보내야 한다 · 기능공은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과 합의하고 다른 나라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	· 우리나라 인력은 해당 알선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채용하거나 내보낼 수 있다 ⇒ 노동력채용 및 해고규정이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	· 계약에 의해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다른 나라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⇒ 외국인노동자 채용 범위 확대

자료: 법률출판사(2005), 『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규집』; 장명봉 편(2011), 『2011 최신 북한법령집』 참고.

3. 정책 전망 및 제언

1) 북한의 투자유치 전망

가. 투자유치 정책 종합평가 및 전망

- 2000년대 후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투자는 중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.
 -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창지투, 라선지대, 단동 및 황금평 지대 개발을 연계하여 북한의 주요 투자국이 됨.
 - 중국의 대북 투자는 자국의 경제개발과 연동하여 추진되고 있으며,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타국 기업의 철수 속에서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.
-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 옴.
 - 2000년대 후반 중국이 동북3성 개발을 중앙정부사업으로 비준하며 경험에 대한 태도를 바꿈.
 - 과거 정부의 환경조성 및 기업의 경험 주도 형식에서 정부 주도하에서 지방 정부가 조력한다는 입장으로 대북 경제협력원칙을 변경함.
- 중국의 대북 투자는 자원개발 및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
 - 북한의 광물 및 기타 지하자원 채취는 취약한 인프라 개발이 선행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므로 중국은 대규모로 주변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고 있음.
 - 인프라 개발은 막대한 재원을 요구하기에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이며, 이로 인해 양국 간 경험은 한층 안정화된 구도로 추진되고 있음.
- 북·중 경험은 중국이 보다 상업적 기반을 둔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.
 - 중국의 시장경제 편입을 계기로 일방적 지원체제에서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전환되었음.
 - 중국은 라진 및 황금평 지대 내 인프라 시설에 대한 사용권과 지대 내 사업

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지대개발을 추진하고 있음.

- 2010년 8월 북·중 정상회담: 후진타오는 ‘정부 주도(政府主導), 기업 위주(企業爲主), 시장운영(市長運營), 호리공영(互利共榮)’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북·중 경협 방침을 제시함.

■ 중국의 대북 투자는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으로 확대되고 있음.

- 2010년 12월 북한의 조선합영투자위원회(이하 합영위)는 중국 국영기업인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(이하 상지공사)와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함.
 - △ 석유정제공장인 승리화학공장 재건 △ 제철소 건설 △ 화력발전소 건설 △ 무산 자철광산 등 지하광물 자원 개발 △ 도로, 부두 등 인프라 시설 구축 △ 국제금융은행 설립 등이 포함됨.
 - 양국은 라선지대에 경공업 지대 건설뿐만 아니라 원유화학·야금·건재 등을 중심으로 한 원자재공업단지, 조선업·자동차를 주생산하는 중장비 공업단지, IT 산업기지 조성계획도 마련함.

나. 황금평, 나선특구에 대한 전망

- 양국정부가 주체가 되어 상호 필요를 충족하는 형식으로 두 지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됨.
- 계획요강에서 정부가 주도하여 안정적으로 개발하며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두 지대를 운영한다고 합의하였음.
 -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고 자생적 경제회생 및 경제능력 구축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.
- 또한 두 지대 개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시점에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수출지향이 아닌 중국과 북한의 내수시장 진입을 대비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.
-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이 과도하게 중국경제에 의존하면서 북

- 중 간의 관계가 정치·외교를 넘어 결국에는 경제 분야까지 중국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
- 2000년 이후 북한의 핵 도발, 천안함·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한 남·북 경협에 급냉은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하였다고 할 수 있음.
-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남·북 관계가 호전된다는 전제하에 개성공단사업 활성화 등의 경협대책을 모색해야 함.

다. 북한의 투자유치 수단으로서의 개성공단 전망

- 개성공단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
- 북한은 남한과의 경협을 통해 개성공단을 개발하여 외화획득을 실현하고 있음.
 - 2009년 개성공단을 통한 외자 흡수는 476만 달러 이상이었으며, 이는 같은 해 UNCTAD가 발표한 북한 전체 외자유치 금액의 2배가 넘는 규모임.
- 남한의 개성공단 투자확대에 따른 주변지역으로의 고용확대가 진행됨.
 - 개성공단 근로자 수는 2011년 말 4만 6,000명을 초과하였으며, 이는 개성 및 인근 지역의 가용노동력을 거의 흡수한 수준임.
 - 따라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추가 노동력 확보 문제로 알려져 있음.
- 개성공단사업 진행을 통해 남한기업의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북한사회로 간접적으로 도입하는 효과가 있음.
 - 개성지역에 남북한 합작기업 설립이 현재 허용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기술이전이나 경영기법 전수는 불가능함.
 - 북한 근로자의 남한기업 설비 이용을 통한 선진화된 생산기술 습득 및 기업관계자의 노무관리 및 사업운영방식 협의를 통한 간접적 경영노하우 전수가 가능함.
- 개성공단뿐 아니라 향후 북한에서 진행될 외자유치와 공단개발을 위한 경협을 축적함.

- 현재 개성공단 개발과정의 경험과 운영·관리체계 등이 북·중 접경지대의 황금평 및 라선특구 공동개발에 거의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음.
- 황금평 및 라선특구: 개발회사의 산업단지 개발과 분양, 관리위원회와 개발회사 간의 공동관리 운영체계 등은 개성공단 내 현대아산, 토지공사의 토지개발, 공단관리위원회 구성, 북한 중앙지도총국의 역할 등의 부분에서 매우 유사함.

2) 남북경협의 방향과 과제

가. 개성공단 사업의 확대와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

- 개성공단은 인프라 시설, 임금수준, 지리적 위치, 산업 고도화, 인력 전문화, 그리고 시장경제 원리가 반영된 경영노하우 학습기회 차원에서 라선 및 황금평 시대보다 경쟁력이 높은 편임.
- 하지만 개성공단의 외자유치는 △ 정치·안보 불안 △ 통행·통관·통신 3통 문제 △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△ 기업의 독자적인 노무관리의 어려움으로 한계를 보임.
- 남북경협 확대 및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한정부의 정책과제
 - 개성공단 내 3통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.
 - 추가적인 남북 합의를 통해 지정 통행 시간대를 폐지하고 무선인식기술 시스템을 구축, 적용하여 통행수속을 수기형태에서 전기·자동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.
 - 전자출입증 제도 도입 이외에 방북, 승인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 One stop 서비스 제도 도입방안도 모색해야 함.
 - 2007년 12월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한 내용(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검수방식을 변경하고 세관검사장을 신설·확충하는 방안)에 대한 실천을 유도해야 함.

- 남측 개성공단 개발주체의 공단 운영, 관리의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북한정부의 협조를 유도해야 함.
 - 베트남 내 대표 공단인 탄뚜언 수출가공구와 베트남, 싱가포르 공업단지를 사례로 들어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역할 제한 및 남한기업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북한을 설득해야 함.
 - 개성공단 개발사업자인 현대아산과 토지공사, 관리기관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해야 함
- △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허용을 통한 원산지 분쟁 해소 △ 4대 남북경협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.
 - 개성공단 생산품의 역외가공 허용뿐 아니라, 남북경협 4대 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함.
 -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 검토, 철도·도로의 상시적인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‘통행합의서’ 체결, 남북경협 협력체 사업활동 지원을 위한 법률적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함.

나. 경쟁력 있는 제도 구축과 실질적 적용

- 한국의 남북경협은 중국보다 경쟁력 있는 제도 구축을 통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.
- WTO의 규약 저촉문제뿐 아니라 남북한 간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조치·절차(△ 교역금지품목 △ 반출금지품목 △ 교역허가 절차 △ 까다로운 교역관리 절차와 통관절차 △ 방북승인) 등은 남북경협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음.
 - 복잡한 행정절차·조치들을 간소화하고 철폐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남북경협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으로 제도적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.
- 북·중 경제관계가 남북경협의 희생을 통해 발전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.
 - 남한의 금강산 관광산업 등 관련 산업 투자시설이 중국기업에 무단으로 양

도되어 활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추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함.

- 또한 남북경협이 중국의 경제정책과 개발전략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전개되도록 접근전략을 마련해야 함.
 -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관련해 치밀한 접근전략을 세우고 실천과제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며, 중국의 동북3성 진흥전략에 담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.
- 단기적으로 중국의 동북아지역 개발을 활용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북한경제의 회생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로 활용하며,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지역의 협력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공동체 형성을 위한 환경 마련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의 기회로 삼아야 함.

다.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

- 북한이 중국보다 남한과의 경협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.
 - 단기적 대책 방안: △ 남북한 접경지역 도로 연계사업 △ 철도 기간 선을 살리면서 보충적으로 단선을 개발하는 사업 △ 항만 현대화 사업 △ 공항 등 기타 보충적인 연계 인프라 개발 사업 동참.
 - 중장기적 대책 방안: 통신시설 강화를 위해 남북접경지역에 중국의 통상구와 같은 통관시설 설치, 각종 서비스 제공(전화, 팩스, 영상대화 등) 및 남북한 간 통신연계를 자유롭게 하는 방안 모색.
 - 또한 대북교역환경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물류, 통신, 통행 부문의 환경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함께 노력해야 함.
 - 남북 접경지역에 중국의 국경세관이나 통상구처럼 전문적인 통행, 통관, 검역, 통신을 보장해주는 기관 및 시설 구축을 통해 3통 문제를 해소해야 함.
 - 더불어 통행, 통관 문제 해소를 위해 △ 남북 왕래자 및 반출입물품 신고절차 간소화 △ 남북 통행차량 신고절차 간소화 △ 통행협정 체결 △ 연속공

급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마련 △ 위험관리기법을 통한 반출입 절차의 간소화 △ 위탁가공교역 물품에 대한 반출입제도 개선 등을 시도해야 함.

라. 남북한 간 산업연계 확대

- 남북경협은 남북 간 상호의존적인 산업구조가 형성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함.
- 남북 간 상호의존적인 산업구조 형성은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축소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.
 - 초기 경공업산업 지원 등을 통해 남북한 산업의존관계를 심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지하자원 개발과 임가공사업 지원을 통해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협력 형태를 지향해 남북한 경제 의존성을 높여야 함.
- 북한 산업이 정상화되도록 북한 경제개발 지원방안 제시
 - 북한의 산업발전 지원: △ 북한의 수출산업 육성지원 △ 북한 기업의 능력향상 지원 △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 지원
 - 수출산업 육성지원: △ 생산능력 확충(섬유·의류 등 경공업 분야를 우선 지원 후 경공업 원부자재 지원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) △ 수출 마케팅 지원(중국, 홍콩 등에 파견된 북측 무역회사와 코트라 현지 무역관과의 정기 교류 협력 및 구매 알선, 투자기업 알선) △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(개성공단에 FDI 유치) 사무실 개설 및 공동운영, 평양에서 외국인 투자설명회 개최 등)
 - 북한기업의 능력향상 지원: 정부, 공공기관,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북측 기업에 대해 시장경제 및 경영방식 교육, 노무·품질관리 기법 전수, 기술자 파견 등 포괄적인 차원에서 지원 전개가 필요함.
 -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 지원: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지하고 국제금융기구의 대금지원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 필요(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은 남북경협의 정치적 리스크 해소와 대북 진출기업의 판로 확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임).
-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.

- △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체계 강화 △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추진체계 확보 △ 개발전략의 공동수립 △ 산업별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정리됨
→ 남북한 산업협력 본격화 ⇒ 남북한 공동 산업개발전략 추진 단계 ⇒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남북한 공동의 의사결정기구로 승격하는 방안 검토 ⇒ 남북한 학자, 정부 관계자, 기업인의 정기적 회합을 통한 정보교류 및 공동의 목표 도출 ⇒ 목표달성 방안을 토론하는 과정을 마련하도록 함.